

# 무배당 Top3 치아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인서

무배당 Top3 치아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9년 3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Top3 치아보험

###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 칭	세 목
무배당(①)Top3(②)치아보험	일반형
	프리미엄형
	어린이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및 ②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및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판매채널이 금융기관대리점의 온라인 채널인 경우 무배당 Top3 e 치아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다.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형/프리미엄형	15년 만기	5/10/15년납	15세 ~ 65세	월납, 연납
	20년 만기	5/10/15/20년납	15세 ~ 60세	
어린이형	15년 만기	5/10년납	0세 ~ 14세	
	20년 만기	5/10년납		

※ 0세의 경우 태아가입을 제외합니다.

### 3. 최대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3,000만원

### 4.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 7.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에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한다.

###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하며,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판매시 안내자료에 관한 사항

판매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상품설명서, 안내장, 표준상품 설명대본 등의 안내자료를 통해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1)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급부명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충전치료비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크라운치료비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가철성의치(틀니)치료비		없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비		없음
임플란트 치료비		없음
치수(신경)치료비		없음
영구치 발거 치료비		없음
특정스케일링 치료비		없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없음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비의 50%를 지급한다.

\*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비의 100%를 지급한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치과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또는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 (나)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다)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라)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은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마)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바)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 3대구치(사랑니, Wisdom teeth)에 대하여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한 경우
- (사) 치아성형(Odontoplasty)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 bonded porcelain restoration in the anterior dentition) 등 미용 목적의 치료

(3)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비를 지급한다.

(4)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약관 제 1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형/프리미엄형]의 제 1 호에서 제 5 호, [어린이형] 제 11 호 및 제 12 호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비를 지급한다.

(5) 동일한 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가지 이상의 ‘주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별첨 제 1 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 청약서의 서식